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도심융합특구 내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
■ 윤종오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314호)

2026. 9.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윤종오의원 대표발의(제2218314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1
3. 주요내용	2
4. 검토의견	4
가. 공동캠퍼스 조성 근거 마련	
(안 제32조의2 제1항 및 제4항)	4
나. 공동캠퍼스 운영을 위한 공익법인 설립	
(안 제32조의2제3항, 제6항, 제7항)	12
다. 공동캠퍼스 설립·운영에 대한 재정지원	
(안 제32조의2제2항, 제7항 및 제8항)	15
라. 국내 대학의 설립·설치 기준 특례	
(안 제32조의2제5항, 제9항 및 제10항)	20
마. 입주승인 취소 시 청문 의무화	
(안 제32조의2제11항부터 제13항까지, 제32조의3)	27

I. 윤중오의원 대표발의(제2218314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윤중오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6. 4. 14.

다. 회 부 일 : 2026. 4. 15.

2. 제안이유

현행법은 5대 광역시 도심을 중심으로 산업·주거·문화·업무·연구가 융합된 복합 혁신공간을 조성·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음. 그러나 현행법은 초·중등교육 특례만 규정하고 고등교육(대학) 관련 조항은 부재하여, 혁신생태계 조성의 핵심인 인재양성·연구개발 기능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특히 현행법에는 대학·연구기관의 설립·입주 및 운영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청년인재 유출 방지, 지역 주력산업과의 연계, 글로벌 교육·연구 자원의 집적과 관련하여 미흡한 측면이 있으며, 국립대학 기반이 취약한 일부 광역시는 고등교육 불균형으로 인해 지역 혁신 성장에 구조적 한계를 겪고 있음.

따라서 도심융합특구는 국내 대학과 외국교육기관·연구기관이 공

동 입주하는 융합형 모델을 통해 국제경쟁력과 지역혁신을 동시에 달성할 필요가 있음. 특히 정부 국정과제인 ‘5극3특’ 균형성장과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거점국립대 집중투자, 지역혁신대학 연계(RISE), 초광역 교육·연구 허브 육성을 중점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도심융합특구 내에 공공캠퍼스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이와 같은 정부 국정과제를 실행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음. 나아가 도심융합특구가 기업·정주 중심의 공간을 넘어 대학·연구기관이 앵커 역할을 수행하는 지식·인재 거점으로 고도화되며, 수도권 집중 완화와 청년 인재의 지역 정착, 산업 맞춤형 융합 연구·교육 강화 등 균형발전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에 특구개발사업구역 및 특구연계사업구역에 대학·외국교육기관·연구기관 등이 입주 가능한 공동캠퍼스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캠퍼스의 효율적 조성을 위한 공익법인 설립 및 재정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 신설).

3. 주요내용

가. 국가·지자체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특구개발사업구역 및 특구연계사업구역에 대학·외국교육기관·연구기관 등이 입주 가능한 공동캠퍼스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부지 매입·시설 건축 등 설립·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광역지자체장의 승인 절차, 공익법인 설립 및 재정지원, 국립학교 설치령 및 대학설립·운영규정 특례(공동캠퍼스 소재지를 교지로 인정, 공동캠퍼스의 임차 가능) 등을 통해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자 함.

4. 검토의견

가. 공동캠퍼스 조성 근거 마련(안 제32조의2제1항 및 제4항)

현행	개정안
<신설>	제32조의2(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혁신산업의 생태계 구축과 도심융합특구의 혁신공간 조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구개발사업구역과 특구연계사업구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자가 입주할 수 있는 교사(校舍), 연구시설 및 부지(이하 “공동캠퍼스”라 한다)를 조성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대학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④ 공동캠퍼스에 입주하려는 자는 교육부 심의를 거쳐 관할 광역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입주 신청 절차, 제출 서류, 승인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¹⁾로 하여금 특구개발사업구역과 특구연계사업구역에 대학·외국교육기관 등이 입주할 수 있는 공동캠퍼스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입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공동캠퍼스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제1항 및 제4항).

【 개정안의 공동캠퍼스 관련 내용 】

개정안	세부 내용
공동캠퍼스 개념 (제1항)	- 혁신산업의 생태계 구축과 도심융합특구의 혁신공간 조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학, 외국교육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입주할 수 있도록 특구개발사업구역 및 특구연계사업구역에 조성한 “교사(校舍), 연구시설 및 부지”
재정적 지원 (제2항, 제8항)	- 공동캠퍼스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
입주승인 (제4항, 제5항)	- 교육부 심의 → 광역지자체장 승인 → 입주 -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준용
운영관리 (제6항)	- 공동캠퍼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학문·과학기술 진흥을 위하여 공익법인을 설치
특례규정 (제5항, 제9항, 제10항)	- 입주 대학의 설립 및 설치 기준을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함 - 공동캠퍼스 소재지를 해당 국립학교의 교지(校地)로 봄 - 교사 및 교지 소유권에 대한 특례 규정
기타	- 관할 시·도지사는 입주기관 및 공익법인을 지도·감독 - 입주승인 취소 시 청문 의무화

※ 자료: 개정안 재구성

1)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3. 「지방공기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공동으로 출자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법인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도시의 도심에 산업·주거·문화시설 등을 복합하여 조성하는 혁신공간²⁾으로, 현재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5개 광역시에 지정·고시되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수립이 진행 중임³⁾.

현행법상 특구개발사업구역은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⁴⁾이 시행되는 구역을 말하고, 특구연계사업구역은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도심융합특구연계사업⁵⁾이 시행되는 구역을 말함⁶⁾.

2)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심융합특구”란 지방 도시의 도심에 산업·주거·문화시설 등을 복합하여 조성하는 혁신공간으로서 제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3) ▲ 부산 : 사업시행자 지정(‘24.11) 후, 실시계획 수립 중, ▲ 울산 : 사업시행자 지정(‘25.6) 후, 실시계획 수립 중, ▲ 대전·광주·대구 : 사업시행자 지정 협의 중
(자세한 사항은 [참고 1] 참조)

4)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이하 “특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이란 도심융합특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도심융합특구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산업·주거·문화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나. 도심융합특구를 혁신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업무·교육·연구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다. 도심융합특구의 기업 및 정주 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도로 건설사업, 전기·통신·가스·용수 등의 공급시설사업,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등의 건설사업 및 공원조성사업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5)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도심융합특구연계사업”(이하 “특구연계사업”이라 한다)이란 특구개발사업과 연계한 계획 수립 및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제8조제3항에 따른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마.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사.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개정안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특구개발사업구역과 특구연계사업구역 내에 대학·외국교육기관 등이 입주 가능한 공동캠퍼스를 조성하도록 하여 도심융합특구 내 고등교육 및 연구개발 기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특구의 자족기능을 높이려는 취지로 이해됨.

유사한 사례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이라 한다) 제63조의9⁷⁾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3⁸⁾에 따른 공동캠퍼스(이하 “세종 공동캠퍼스”라 한다)가 세종시에 조성·운영되고 있음⁹⁾.

같은 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건설청장”이라 한다)이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대학, 외국교육기관, 국내외 연구기관이 입주할 수

6) 같은 법 제8조는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에 특구개발사업구역 및 특구연계사업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양 구역은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그 범위와 내용이 정해지는 구조임.

7)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3조의9(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등) ① 건설청장은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통한 자족기능 확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자가 입주할 수 있는 교사(校舍), 연구시설 등과 그 부지(이하 “공동캠퍼스”라 한다)를 조성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학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8)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의3(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계획) ① 건설청장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법 제63조의9제1항에 따른 공동캠퍼스(이하 “공동캠퍼스”라 한다)를 조성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교사(校舍), 연구시설 등의 건립 및 부지의 조성. 이 경우 대학이 임대하여 입주할 수 있는 시설 및 부지는 법 제63조의9제4항에 따라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시설 및 부지의 임대·공급 등 공동캠퍼스의 관리 및 운영
3. 공동 교육·연구, 학제(學際)간 융합 등 산학연 협력 활성화
4. 그 밖에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건설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계획에 따라 공동캠퍼스를 조성하여야 한다.

9) 세종 공동캠퍼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참조 2] 참고

있는 공동캠퍼스를 조성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캠퍼스 입주승인, 대학 설립·설치 기준 특례, 공익법인 설치 및 비용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행복도시법」 과 개정안 비교 】

항목	「행복도시법」	개정안
입주대상	◦ 대학 ◦ 외국교육기관	◦ 대학 ◦ 외국교육기관
	◦ 국내외 연구기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승인구조	◦ 심의: 위원회 ◦ 승인: 건설청장	◦ 심의: 교육부 ◦ 승인: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대학 설립기준	교육부장관이 별도 기준 설정 가능	
교지·교사 특례	-	◦ 국립학교 교지 간주 특례 ◦ 비소유 교사·교지 사용 특례
운영법인	공익법인 설치 및 비용지원 규정	
특별회계	행복도시 특별회계	-
재정지원 기한	29년 12월 31일까지	32년 12월 31일까지

※ 자료: 법률 내용 재구성

개정안은 세종 공동캠퍼스와 유사한 형태의 공동캠퍼스를 특구개발 사업구역 및 특구연계사업구역에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공동캠퍼스가 설립될 경우 다수의 대학과 연구기관이 강의실·도서관·학술지원시설 등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집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대학 구조조정 및 정원관리 기조 아래 개별 대학의 독자적 캠퍼스 신설이나 대규모 이전이 쉽지 않은 현실을 고려하면, 기존 대학의 일부 교육과정 또는 연구조직이 도심융합특구 내 기업·연구기관과 연계하여 입주하는 공동캠퍼스 방식은 도심융합특구 내 교육 시설 유치를 위한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의 심사 과정에서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세종 공동캠퍼스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을 중심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전체를 계획·설계하는 체계 아래 조성된 반면, 도심융합특구는 여러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각기 다른 여건 아래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차이가 있는바 동일한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둘째, 「행복도시법」에서는 공동캠퍼스 구성에 관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¹⁰⁾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교육부의 심의를 거쳐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10)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3조의9(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등) ③ 공동캠퍼스에 입주하려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동캠퍼스 입주를 신청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입주절차 및 입주승인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심의’는 위원회 등 합의제 기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교육부를 심의 주체로 규정한 개정안은 법제상 타당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따라서 공동캠퍼스 조성 및 입주승인은 고등교육기관의 설립·운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교육부장관과의 협의 또는 의견 제출 절차를 거치도록 하거나, 별도의 교육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다만,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두는 경우 중앙 차원의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최종 승인하도록 하는 구조가 의사결정 권한과 책임의 배분 측면에서 적정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셋째, 과거 세종 공동캠퍼스 관련 「행복도시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지방대학 구조조정 국면에서 새로운 공동캠퍼스가 기존 대학을 잠식하거나 인근 대학 및 주변 지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¹¹⁾,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현 상황에서 공동캠퍼스 도입이 기존 대학체계와 지역 고등교육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1) 제20대 국회 제354회(정기회) 제1차국토교통위원회(국토법안심사소위)(2017.09.19.)

넷째,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공동캠퍼스를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까지 공동캠퍼스 조성 주체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다소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행복도시법」은 건설청장이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공동캠퍼스를 조성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¹²⁾하여 공동캠퍼스 조성 주체를 보다 명확히 하고 있는바, 개정안도 공동캠퍼스 조성 주체로 관할 시·도지사등을 명시하는 등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과 관련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재원 확보 여부가 불분명한 채로 사업시행자에게 추가적인 공동캠퍼스 조성 부담이 전가될 경우 사업시행자의 재정적 여건이 더욱 악화되어 사업 전반의 지연 또는 중단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고,

국토교통부는 특구개발사업구역 및 특구연계사업구역의 사업시행자와 공동캠퍼스 조성 사업자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각각의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업구역에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12) 「신 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9조의3(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계획) ① **건설청장**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법 제63조의9제1항에 따른 공동캠퍼스(이하 “공동캠퍼스”라 한다)를 조성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나. 공동캠퍼스 운영을 위한 공익법인 설립(안 제32조의2제3항, 제6항, 제7항)

현행	개정안
<신설>	제32조의2(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등) ③ 제1항에 따라 공동캠퍼스를 조성한 사업시행자는 그 일부를 제6항에 따른 공익법인에 기부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른 관할 시·도지사등은 공동캠퍼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학문·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을 공동캠퍼스에 둘 수 있으며, 해당 공익법인의 설립 등기와 정관 및 사업의 내용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공익법인은 제6항에 따른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1.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기관·단체·개인·법인 등의 기부금 또는 후원금 3. 자산운영과 관련된 이자수익금 4. 공익법인의 사업 수익금 5. 그 밖의 수익금

개정안은 공동캠퍼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학문·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을 공동캠퍼스에 둘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행복도시법」도 유사한 규정¹³⁾을 두고 있으며, 현재 세종 공동캠퍼스의 경우 세종공동캠퍼스운영법인이 설립되어 세종 공동캠퍼스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지원하고 있음.

개정안은 복수의 대학·연구기관이 함께 입주하는 공동캠퍼스의 구조를 고려하여, 시설관리, 공용공간 운영, 입주기관 조정, 연구·산학협력 연계 등의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전담 운영주체를 두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행복도시법」은 종전에는 개정안과 같이 사업시행자가 조성

1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3조의9(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등)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공동캠퍼스를 조성한 경우에는 그 일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5항에 따른 공익법인에 기부 또는 출연할 수 있다.

⑤ 건설청장은 공동캠퍼스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 학문 및 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 등 지원을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을 공동캠퍼스에 둘 수 있다. 이 경우 공익법인의 설립 등기와 정관 및 사업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공익법인은 제5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1.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기관·단체·개인·법인 등의 기부금 또는 후원금
3. 자산운영과 관련된 이자수익금
4. 공익법인의 사업 수익금
5. 그 밖의 수익금

한 공동캠퍼스를 공익법인에만 기부 또는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¹⁴⁾,

이에 따라 세종공동캠퍼스운영법인이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재산세 등 상당한 세부담이 발생하고, 자체예산 부족으로 공동캠퍼스 취득과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한바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비과세 대상이면서 보다 안정적인 자산 관리가 가능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까지 기부·출연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행복도시법」이 개정¹⁵⁾된 바 있음.

이러한 경과를 고려할 때 공동캠퍼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안 제32조의2제3항의 기부·출연 대상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1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2026. 5. 12. 법 개정 이전)
제63조의9(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등)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공동캠퍼스를 조성한 경우에는 그 일부를 제5항에 따른 공익법인에 기부 또는 출연할 수 있다.

15)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633호, 2026. 5. 12., 일부개정]
제63조의9(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등)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공동캠퍼스를 조성한 경우에는 그 일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5항에 따른 공익법인에 기부 또는 출연할 수 있다.

다. 공동캠퍼스 설립·운영에 대한 재정지원(안 제32조의2제2항, 제7항 및 제8항)

현행	개정안
<신설>	제32조의2(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등)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공동캠퍼스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지의 매입 및 시설의 건축 등 공동캠퍼스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⑦ 공익법인은 제6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1.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기관·단체·개인·법인 등의 기부금 또는 후원금 3. 자산운영과 관련된 이자수익금 4. 공익법인의 사업 수익금 5. 그 밖의 수익금 ⑧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부칙 제2조(비용지원의 유효기간) 제32조의2제2항, 제7항제1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에 한정한다)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203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캠퍼스의 설립·운영에 필

요한 비용을 지원하고(제2항),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제8항).

공동캠퍼스는 초기 건설 및 조성비뿐 아니라, 도서관, 학생지원시설, 공용회의공간 및 행정·운영조직 등 공동이용시설을 전제로 하므로 운영단계에서도 상당한 재정소요가 수반될 가능성이 큼.

실제로 세종 공동캠퍼스는 2019년부터 총사업비 약 2,800억원을 투입하여 조성하였고, 그 운영재원은 정부출연금, 지방보조금 및 자체재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영 단계에서의 지출 역시 경상비 비중이 높아 공동이용시설 유지·관리와 조직 운영에 지속적인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 2025회계연도 세종 공동캠퍼스 공익법인 재원 및 지출 구조 】

(단위: 천원, %)

수입 항목	금액	비중	지출 항목	금액	비중
정부출연금	1,263,000	25.9	인건비	855,507	17.5
지방보조금	1,263,000	25.9	경상비	3,713,407	76.1
자체재원	2,354,659	48.2	사업비	311,745	6.4
합계	4,880,659	100.0	합계	4,880,659	100.0

※ 자료: 행복청

이처럼 공동캠퍼스는 건설 단계에서도 많은 비용이 들고, 건설 이후에도 지속적인 운영재원 확보가 필요한 사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개정

안과 같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필요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음.

다만, 세종 공동캠퍼스의 경우 당초 의원안은 공동캠퍼스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지원 규정¹⁶⁾을 두고 있었으나,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의 반대로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해당 조항이 삭제되고, 사업시행자인 LH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이익을 활용하여 공동캠퍼스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수정되어¹⁷⁾,

현행 「행복도시법」은 공동캠퍼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아니라, 공동캠퍼스의 운영·관리를 담당하는 공익법인에 대하여 출연 또는 보조하는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음.

또한, 세종 공동캠퍼스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에 공동캠퍼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세출 근거가 마련¹⁸⁾되

16)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 부개정법률안」(제2002828호, 김현아의원 대표발의)

제59조의2(공동캠퍼스 조성 및 지원 등) ① 행복청장은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며, 동 계획에 따라 공동캠퍼스를 조성하거나 제3자에게 조성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제3자가 공동캠퍼스를 조성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캠퍼스에 입주한 자 또는 입주승인을 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입주 및 교육·연구 등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17) 제20대 국회 제354회(정기회) 제1차국토교통위원회(국토법안심사소위)(2017.09.19.)

18)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44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운영) 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관한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5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②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0의2. 제63조의9에 따른 공동캠퍼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

어 있어, 비교적 안정적인 재원조달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이에 비하여 도심융합특구는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같은 별도의 특별회계를 두고 있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여건의 편차도 크며, 도심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이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시행자에게 재정적인 부담이 집중될 우려가 있음.

또한 공동캠퍼스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근거를 둘 경우 복수의 도심융합특구에서 유사한 재정지원 요구가 제기될 수 있어 국가재정 부담이 크게 확대될 수 있음.

기획예산처는 도심융합특구가 기존 고등교육기관 등 인재양성 및 연구개발 기반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별도의 공동캠퍼스 설립 및 운영비에 대한 국비 지원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바, 이러한 의견을 고려하여 입법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한편, 개정안 부칙은 재정지원 규정의 효력을 2032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일정 기간 이후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아닌 자체수입을 통해 운영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음.

「행복도시법」상 공동캠퍼스에 대한 재정지원 규정에도 유사한 규정¹⁹⁾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재정지원 규정의 효력을 한시적으로 규정한 개정안 부칙의 입법 방향은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행복청의 설명에 따르면 「행복도시법」상 한시규정은 입주기관의 입주 완료 시점을 고려하여 설정되었는데, 개정안이 203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한 근거는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현행 부칙상 유효기간의 설정 근거와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9) 「신 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부칙 <법률 제19770호, 2023. 10. 24.>

제2조(비용지원의 유효기간) 제45조제2항제10호의2, 제63조의9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라. 국내 대학의 설립·설치 기준 특례(안 제32조의2제5항, 제9항 및 제10항)

현행	개정안
<신설>	제32조의2(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등) ⑤ 공동캠퍼스에 입주하려는 대학의 설립 및 설치에 관한 기준은 「고등교육법」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한다. ⑨ 공동캠퍼스에 입주하는 국립학교의 경우 「고등교육법」, 「교육기본법」 및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공동캠퍼스 소재지를 해당 국립학교의 교지(校地)로 본다. ⑩ 제4항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은 대학(「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그 주된 위치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 또는 연구조직의 일부를 공동캠퍼스에서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및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설립주체의 소유가 아닌 건축물 또는 토지를 교사 및 교지로 사용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1. <u>공동캠퍼스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 또는 연구조직의 범위, 수용하는 학생정원 및 운영기간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갖출 것</u> 2. <u>공동캠퍼스에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토지에 대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이 가능한 임차권(사용대차를 포함한다) 등을 확보할 것</u> 3. <u>교육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관리계획을 갖출 것</u>

개정안은 공동캠퍼스에 입주하려는 대학의 설립 및 설치 기준을 「고등교육법」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하며(제5항), 공동캠퍼스에 입주하는 국립학교의 경우 공동캠퍼스 소재지를 해당 국립학교의 교지로 보며(제9항), 일정 요건 아래 설립주체의 소유가 아닌 건축물 또는 토지를 교사 및 교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10항).

① 대학의 설립 기준 특례(제5항)

「고등교육법」 제4조제1항²⁰⁾은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대학설립·운영 규정」(대통령령) 제2조제1항제1호는 대학 설립 시 제4조에 따른 교사(校舍) 및 제5조에 따른 교지(校地)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은 교사와 교지가 원칙적으로 설립주체의 소유여야 한다고 규정²¹⁾하고 있음.

20) 「고등교육법」

제4조(학교의 설립 등) ①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21)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설립인가기준등) ① 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대학설립의 인가(국립대학의 경우에는 개교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교사 및 제5조에 따른 교지를 확보할 것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대학의 분교를 설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⑥ 제4조에 따른 교사 및 제5조에 따른 교지는 설립주체의 소유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 중 그 특별법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이하 “대학원대학”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연구기관 소유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2. 설립주체가 다음 각 목의 토지를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여 대학원대학을 설립하거나 대학에 대학원을 두는 경우

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 중 교육 또는 연구용 시설에 사용되는 토지

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3호 각 목의 시설에 사용되는 토지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 내의 산·학·연 클러스터

3. 설립주체가 제2호 각 목의 토지에 소재하는 건물을 임대하여 별표 2에 따른 연구시설을 두는 경우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계약학과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사업자단체 및 직능단체가 제공하는 시설에서 운영하는 경우

5. 설립주체가 설립주체의 소유가 아닌 시설·건축물을 별표 2에 따른 학생기숙사 등 학생 주거용 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제4조(교사) ① 교사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사의 확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교지) ① 대학은 별표 4의 교지기준면적에 따른 교지를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적합한 장소에 확보해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대학의 교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교지가 교지별로 수용하는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별표 4의 교지기준면적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안은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동캠퍼스에 입주하려는 대학의 설립 및 설치 기준을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데, 이는 공동캠퍼스처럼 여러 대학이 하나의 부지와 시설을 공동 이용하는 경우 현행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으로 보임.

교육부는 도심융합특구의 정책 목적과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목적 간 직접적 연계성이 부족하여 동 특구에 외국교육기관 설립 특례를 부여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따라서 「행복도시법」도 이와 유사한 규정²²⁾²³⁾을 두고 있다는 점과 교육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② 국립학교 교지 특례(제9항)

안 제32조의2제9항은 공동캠퍼스에 입주하는 국립학교의 경우 공동캠퍼스 소재지를 해당 국립학교의 교지로 보도록 하는 규정임.

22)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3조의9(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등) ④ 공동캠퍼스에 입주하려는 대학의 설립 및 설치에 관한 기준은 「고등교육법」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한다.

23) 동 규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동캠퍼스 입주대학 설치·운영 고시」가 제정되어 별도의 교사·교지 확보 기준이 적용되고 있음.

「국립학교 설치령」(대통령령)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의 관할 아래 두는 학교의 명칭·소재지 및 과정은 [별표 1]에 규정되어 있음²⁴⁾.

따라서, 국립학교의 일부를 공동캠퍼스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동 대통령령의 [별표 1]을 개정해야 하는데, 개정안은 공동캠퍼스에 입주하는 국립학교의 경우 공동캠퍼스 소재지를 해당 국립학교의 교지(校地)로 보도록 함으로써 별도 대통령령 개정 없이도 공동캠퍼스 입주를 원활하게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안 제32조의2제9항은 「행복도시법」에는 없는 조항으로, 세종 공동캠퍼스는 「국립학교 설치령」 [별표 1]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²⁵⁾에서, 도심융합특구 내 대학에 대해서만 교지 간주 특례 규정을 두는 것이 형평성 측면에서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③ 교사 및 교지 사용 특례(제10항)

안 제32조의2제10항은 입주승인을 받은 대학이 그 주된 위치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 또는 연구조직의 일부를 공동캠퍼스에서 운영하려는 경우, 일정한 운영계획·임차권 확보 및 관리계획을 갖춘 때에는 설립 주체의 소유가 아닌 건축물 또는 토지를 교사 및 교지로 사용할 수 있

24) 「국립학교 설치령」

제3조(명칭 등) 교육부장관의 관할 아래 두는 학교의 명칭·소재지 및 과정은 별표 1과 같다.

25) 세종 공동캠퍼스에 입주한 국립대학교인 국립공주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국립한밭대학교는 같은 영 [별표 1]에 소재지로 세종특별자치시가 명시되어 있음.

도록 하는 규정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르면 대학의 교
사 및 교지는 원칙적으로 설립주체의 소유여야 하는데, 개정안은 일정
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설립주체의 소유가 아닌 건축물 또는 토지를 교사
및 교지로 사용할 수 있는 특례를 법률에 개별적으로 명시하려는 취지
로 이해됨.

안 제32조의2제10항은 「행복도시법」에는 없는 조항으로,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교사 및 교지 사용과 관련하여 별도의 기준
을 설정함으로써 실현할 수 있으나, 개정안은 관련 특례를 개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입주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음.

한편,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의7²⁶⁾은 대학의 일부를 산업단

26)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의7(대학의 일부를 산업단지 또는 혁신도시 안으로 위치변경하는 경우의 특례) ① 대학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이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대학의 일부를 그 주된
위치에서 변경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 안에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설립주체의 소유가 아닌 건축물 또는 토지를 교사 및 교지로 사용할 수
있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산업단지와 인접한 지역을 포함한다)
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 내의 산·학
·연 클러스터(산·학·연 클러스터와 인접한 지역을 포함한다)

제9조(운영 중인 대학에 대한 특례) ① 설립 이후 최초 편제완성연도를 경과하여 운영 중인 대
학(대학원대학을 포함하며, 이하 “운영 중인 대학”이라 한다)은 교육 및 연구 여건 개선을 위하
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2조제6항 및 제7항에도 불구
하고 건축물 또는 토지를 임차하여 교사 또는 교지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은 제4
조에 따라 산정된 면적 이상의 교사를 확보한 경우에만 임차할 수 있다.

1. 해당 건축물 또는 토지에 지상권, 전세권 또는 등기되는 임차권을 설정했을 것. 이 경우 전세

지 또는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안으로 위치를 변경하여 운영하는 경우 설립주체의 소유가 아닌 건축물 또는 토지를 교사 및 교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는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의7의 각 호에 “공동캠퍼스”를 추가하는 방식으로도 개정안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 교육부장관이 별도의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안 제10항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 특정 지역의 캠퍼스에 대해서만 예외를 허용하는 경우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권 또는 임차권은 5년 이상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한다.

2. 해당 건축물 또는 토지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해당 대학의 교지경계선(제5조제4항에 따라 교지가 분리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경우 그 교지의 경계선을 포함하며, 교지가 분리된 경우에는 각각의 교지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의 최단거리가 20킬로미터 이하일 것

나. 해당 대학의 교지와 동일한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시, 군, 구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내에 있을 것

마. 입주승인 취소 시 청문 의무화(안 제32조의2제11항부터 제13항까지, 제32조의3)

현행	개정안
<신설>	제32조의2(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등) ⑪ 제4항에 따른 관할 시·도지사등은 제4항에 따라 입주한 자(이하 “입주기관”이라 한다) 및 공익법인에 대하여 공동캠퍼스 입주승인기준 이행 또는 운영·관리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동캠퍼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⑫ 제4항에 따른 관할 시·도지사등은 입주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입주승인기준 또는 승인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제11항에 따른 명령이나 검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⑬ 제4항에 따른 관할 시·도지사등은 입주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른 입주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

현행	개정안
	으로 입주승인을 받은 경우 2. 제1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32조의3(청문) 관할 시·도지사등은 제32조의2제13항에 따른 입주승인 취소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안은 관할 시·도지사등이 입주기관 및 공익법인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승인기준 또는 승인내용 위반, 자료제출 명령이나 검사 불응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승인을 받은 경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안 제32조의2제11항부터 제13항까지).

또한 안 제32조의2제13항에 따라 입주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32조의3).

「행복도시법」에도 동일한 내용이 규정²⁷⁾되어 있으며, 개정안은 공

27)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3조의9(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등) ⑧ 건설청장은 제3항에 따라 입주한 자(이하 “입주기관”이라 한다) 및 공익법인에 대하여 공동캠퍼스 입주승인기준 이행 또는 운영·관리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동캠퍼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⑨ 건설청장은 입주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동캠퍼스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및 제재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입주 승인 취소와 같이 입주기관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처분에 대하여 사전적 절차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일반적인 감독·제재 체계 및 행정절차 원칙에 비추어 타당한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579

1. 입주승인기준 또는 승인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제8항에 따른 명령이나 검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⑩ 건설청장은 입주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입주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승인을 받은 경우

2. 제9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63조의10(청문) 건설청장은 제63조의9제10항에 따른 입주승인 취소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참고 1

도심융합특구 개요

□ 개념

- 지방 주요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공간을 구축하여 기업투자·성장과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광역 성장거점



- (기존사업과 차별성) 성장기반을 갖춘 주요도시 도심을 대상, 공간 조성(H/W)과 기업지원(S/W)을 융합, 규제완화·인센티브 등 특례 제공

□ 주요 내용 [국토부 플랫폼 조성 + 범부처 기업·청년 지원 프로그램]

- (공간개발) 기업 지원공간과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문화·주거·상업 시설을 도심에 **종합 제공**(입지규제를 완화하여 고밀·복합개발)
- (기업·청년지원) 각 부처의 기업·대학·산업 지원 프로그램을 **종합 제공***하고, 타 특구 중복지정 및 입주기업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 부여
* (중기부) 중소·벤처기업 지원, (산업부) 특화산업 육성지원, (과기부) R&D 중심 지원
- (지원체계) 범부처 협업을 통해 특구를 지원하고, **지역 내 전담기관도** 설립하여 **지속적·체계적 운영**(특구진흥재단, 기업종합지원센터)

□ 추진 현황

- (특별법 제정) 도심융합특구법 제정('23.10.24공포), **'24.4.25 시행**
- (선도사업)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5개 광역시에 특구 지정 및 기본계획 승인('24.11),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수립 단계 진행 중
* ▲ 부산 : 사업시행자 지정('24.11) 후, 실시계획 수립 중, ▲ 울산 : 사업시행자 지정('25.6) 후, 실시계획 수립 중, ▲ 대전·광주·대구 : 사업시행자 지정 협의 중

참고 2

공동캠퍼스(세종) 사례

□ 세종 공동캠퍼스 개요

- (추진배경) 개별 대학의 자력 입주에 한계가 있어 다수의 대학이 단일캠퍼스에 함께 입주하는 '공동캠퍼스'를 공공주도로 추진
 - * (위치/면적) 4-2생활권 대학교용지(4-2 외 10필지)/ 약 60만m²(내부도로 포함)
- (조성근거) 행복도시법 시행령에 따라 LH가 캠퍼스 조성(영 제29조의3)
- (건립방안) 공동캠퍼스 부지는 LH가 일괄 조성하고, ①임대형 캠퍼스 내 시설건립은 LH, ②분양형 캠퍼스 시설은 각 부지 매입기관이 건립
 - * 사업비는 약 2,800억원 수준으로 추정, 향후 건축계획 구체화에 따라 확정 예정
- (정원) 총 학생정원 3,067명 (임대형 캠퍼스 878명 + 분양형 캠퍼스 2,189명)
- (현황)

구분	명칭	계열	정원	개교(예정)
임대형 캠퍼스	서울대학교	행정정책대학원	72명	개교 완료
	KDI국제정책대학원	행정정책대학원	114명	
	한밭대학교	AI/ICT 관련 대학·대학원	252명	
	충북대학교	수의대·대학원	150명	
	충남대학교	의대·대학원	290명	
분양형 캠퍼스	공주대학교	AI/ICT 대학·대학원	599명	'28년
	충남대학교	AI/ICT 대학·대학원	800명	
	고려대학교(세종)	행정대학원, AI/ICT 대학	790명	'30년

□ 세종 공동캠퍼스 위치도

